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6. 29 선고 2021가단540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6. 2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10. 1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9. 3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. 11. 9. 접수 제2231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9. 3. 14. 접수 제4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유지상

별지